

의안번호	2205095
의 퇴 인	이정문의원
회 답 일	2024.12.27.
추 계 번호	24D46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제대군인의 날을 지정하고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3억 6,900만원, 2030년 93억 9,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69억 1,000만원(연평균 93억 8,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제대군인의 날 (안 제3조의2제1항)	309	315	322	328	335	1,610	322
전직지원금 인상 (안 제18조의2제3항)	9,060	9,060	9,060	9,060	9,060	45,300	9,060
합계	9,369	9,375	9,382	9,388	9,395	46,910	9,382

주: 1. 제대군인의 날(안 제3조의2제1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이고, 전직지원금 인상(안 제18조의2제3항)은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하기로 함

2. 본 추계에서는 제대군인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하고 전직지원금 인상은 대상자 수(추정치), 지급률, 지급 개월 수(6개월 추정), 1인당 증가액을 곱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2제1항 (제대군인의 날)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	의무규정
2	안 제18조의2제3항 (전직지원금)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지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 ※현행법은 '100분의 50 범위에서'로 규정하고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2제1항 (제대군인의 날)	○	-
2	안 제18조의2제3항 (전직지원금)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제대군인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하고 전직지원금 인상은 대상자 수(추정치), 지급률, 지급 개월 수와 1인당 증가액을 곱하여 추계
 -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의 주간에 간략한 선포식 및 홍보활동 등만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기념식 행사 등에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법 시행 당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적용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제대군인의 날(안 제3조의제1항)

-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제대군인의 날 기념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
 -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12개의 기념일 행사의 평균 비용은 2024년 기준 2억 9,70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적용
- 추계결과, 제대군인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900만원, 2030년 3억 3,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6억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제대군인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제대군인의 날	309	315	322	328	335	1,6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전직지원금 인상(안 제18조의제3항)

- 본 추계에서는 대상자를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로 구분하여 인원을 추정한 후 지급률, 지급 개월 수, 1인당 증가액을 곱하여 산출
 - 지급대상자 수는 중기복무자 3,450명, 장기복무자 1,218명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본 추계에서는 전직지원금 지원 대상자 수가 2026년까지는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²⁾에 따라 증가한 후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지급률은 중기복무자 85%, 장기복무자 82% 적용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데, 국가보훈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중기복무자 85%, 장기복무자 82%로 추정되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2)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는 각각 2,536명, 712명이고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8%, 19.6%로 추정

- 지급 개월수는 평균 6개월로 가정하고 1인당 증가액은 중기복무자 44만원, 장기복무자 22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지급 개월 수는 각각 7개월, 8개월이나 국가보훈부의 최근 5년(2019~2023년) 지급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평균 지급 개월 수는 6개월로 보아 이를 적용하기로 함
 - 국가보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전직지원금은 각각 55만원과 77만원
 - 개정안에 따른 전직지원금은 월 99만원(=구직급여일액 최고액 66,000원×30×50%)으로 중기복무자와 장기복무자의 1인당 증가액은 각각 44만원(=99만원-55만원), 22만원(=99만원-77만원)이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전직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0억 6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3억원으로 추정

[표 3] 전직지원금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대상자 수 (a, 명)	중기	3,450	3,450	3,450	3,450	3,450	-
	장기	1,218	1,218	1,218	1,218	1,218	-
1인당 증가액 (b, 만원)	중기	44	44	44	44	44	-
	장기	22	22	22	22	22	-
추가재정소요 (=a×b×6개월×지급률, 백만원)	중기	7,742	7,742	7,742	7,742	7,742	38,710
	장기	1,318	1,318	1,318	1,318	1,318	6,590
	합계	9,060	9,060	9,060	9,060	9,060	45,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제대군인의 날 지정, 전직지원금 인상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3억 6,900만원, 2030년 93억 9,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469억 1,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제대군인의 날	309	315	322	328	335	1,610
전직지원금 인상	9,060	9,060	9,060	9,060	9,060	45,300
합계	9,369	9,375	9,382	9,388	9,395	46,91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는 제대군인의 날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하고, 전직지원금 인상은 대상자 수(추정치), 지급률, 지급 개월 수(6개월 추정), 1인당 증가액을 곱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